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 시정 요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청구 및 정산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징 계 대 상 자 충청남도 태안군 ○○○○과 지방○○○○○ ○○○
(전 ○○○○과)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과 지방○○○○○ ○○○
(전 ○○○○사업소 ○○지소)

② 충청남도 보령시 (○○○○실 파견) 지방○○○○○ ○○○
(전 보령시 ○○○○사업소)

③ 충청남도 아산시 ○○과 지방○○○○○ ○○○

④ 충청남도 태안군 ○○○○○○과 지방○○○○○ ○○○

⑤ 충청남도 태안군 ○○○○과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은 2015. 1. 13.부터 2017. 7. 7.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과에서 근무하면서 ‘○○소하천 정비공사’의 공사 감독업무를, 지방○○
○○○ ○○○은 2016. 1. 21.부터 2017. 7. 19.까지 충청남도 ○○○○사업소 ○
○지소에서 근무하면서 ‘○○대교 보수보강 1차공사 및 2차공사’의 공사 감독업

무를, 지방○○○○ ○○○은 2016. 7. 1.부터 2017. 12. 31.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동 이주단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의 공사 감독업무를, 지방○○○○○ ○○○은 2016. 1. 21.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과에서 근무하면서 ‘○○면 ○○리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의 공사 감독업무를, 지방○○○○○ ○○○은 2016. 1. 25.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과에서 근무하면서 ‘○○포 관광거점 조성사업 조망 공간 1 설치공사’의 공사 감독업무를, 지방○○○○ ○○○은 2015. 1. 13.부터 2017. 1. 8.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과에서 근무하면서 ‘○○도 방파제 보강공사’의 공사 감독업무를 각각 수행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이에 따라 2014.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충청남도 및 천안시 등 11개 시·군에서는 총 20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법면 보호 모래주머니, 법면 보호 천막 등 공사용 자재, 차선규제봉, 시선유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임시 야적장 간판 등 공사 안내 간판 구매 또는 가 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명목 중 ‘인건비’는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하

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장비 및 교통 신호수 등 단순노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위 관서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 521,542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 적정하게 집행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청구(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정산업무 태만 (충청남도,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한편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 및 집행 사진 등)를 제출받아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²⁾'의 경우에는 아래 [사진 1]과 같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월별 매입 목록표를 제출받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취소 또는 금액 축소) 여부 등을 확인³⁾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 한 물품 등의 증빙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확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년 7. 1. 이후)

3)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계약상대자)를 통해 지정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를 통해 수정신고(신고 금액 축소 또는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인하는 방법을 통해 증빙자료의 적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충청남도 및 천안시 등 3개 시·군에서 추진한 ‘○○대교 보수 보강공사 등 9건의 공사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⁴⁾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약 72,753천원을 지급 받았으며,

[사진1]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 및 홈택스 발급사실 조회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작성(위당작성)	국세청 홈택스 제3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조회

또한 천안시 및 태안군 등에서 추진한 ‘아산○○지구~천안○○구간 연결 도로 개설공사’ 등 12건의 공사의 경우 계약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안전관리비를 청구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취소)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85,519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천안시 등 5개 시·군에서 추진한 ‘○○읍 ○○리 일원 배수관 매설 공사’ 등 23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에 따라 전자세금계

4) 계약상대자의 거래업체와 다른명목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번호, 승인번호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음을 자인서를 통해 인정함.

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업체 간 거래명세서만을 작성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세금신고를 누락한 채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총 106,405천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부여군(○○○○과)에서 추진한 ‘○○○○거리 조성사업’ 등 4건에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집행한 실적을 첨부(증빙)하지 않은 채 청구하였음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총 31,224천원의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한편 천안시(○○과)에서 추진한 ‘○면 ○○○리 일원 배수관 매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월별 기성 청구 시 아래 [사진2]와 같이 다른 사업 현장 공사 현황 증빙 사진을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4,343천원을 지급 받았다.

[사진2] 안전관리비 구매 증빙사진(타 사업현장 사진 제출을 통한 부당 청구)



더구나 태안군(○○○○과)에서 추진한 ‘○○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를 기성 청구하면서 아래 [사진3]과 같이 안전용품을 취급하지 않는 ‘등산용품 전문판매점’에서 현장소장 등이 사적으로 의류 등을 구

매한 비용을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하였으며,

또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사진과 전혀 다른 상표의 품목(안전화) 및 의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8,070천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사진3] 안전용품 미 취급(등산용품 전문 판매점) 전자세금 계산서 제출 등

등산용품 전문판매점 전자세금계산서(○○○○ ○○점)	등산용품 전문판매점 전자세금계산서(○○○○ ○○점)
등산용품전문 판매점(안전용품 미취급 또는 다른품목취급)	판매상품(캠프○○) 과 다른 증빙사진 첨부(프로○○○)

위와 같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는 감독공무원의 대다수가 1차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회’ 및 계약상대자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 확인’ 방법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집행 증빙서류(사진)의 중복 여부, 목적대로 적정 사용 사실 확인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결과적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3억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전체 안전관리비 7,715,378천원의 10.6%에 달하는 251건의 약 821,486천원 상당을 감액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의 행위 중 계약상대자가 안전 용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목적과 다른 내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비용을 지급하는 등 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태안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 중 지방○○○○○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보령시장, 아산시장, 태안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방○○○○○ ○○○, 지방○○○○○ ○○○, 지방○○○ ○○ ○○○, 지방○○○○○ ○○○, 지방○○○○○ ○○○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 당진시장, 청양군수, 태안군수는

[시정]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 또는 증빙, 수정발급(취소)하거나, 유용한 후 안전관리비를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은 ○○○○산업(주) 대표 ○○○ 등 21개사를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제347조(사기)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당진시장, 부여군수는

[시정] 안전관리비 집행액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한 ○○건설(주) 대표 ○○○ 등 27개사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세무관련 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 공주시장, 보령시장, 아산시장, 서산시장, 계룡시장, 당진시장, 부여군수, 청양군수, 예산군수, 태안군수는

[시정]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청구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821,486천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시 미 확인된 시·군 및 ‘3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 집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사항에 대하여 적의 조치하고 결과를 우리 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전수조사 실시 및 향후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및 ‘월별 매입 목록 조회’ 등을 통

해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사업명을 명시하고 구매 물품 별 세부목록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당 사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집행 내역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목적외 사용		허위 부담 청구		허위 부담 청구 내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집행 실적 부 중빙		집행 실적 허위 총빙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세금신고 누락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251	821,486	202	521,242	49	300,244	4	31,224	1	4,343	12	85,519	23	106,405	9	72,753	
○○○○사업소	17	105,206	12	51,043	5	54,163									5	54,163	
천 안 시	18	61,816	10	16,851	8	44,965	1	8,573	1	4,343	1	10,306	4	14,791	1	6,952	
공 주 시	9	21,734	9	21,734													
보 령 시	23	56,057	19	30,449	4	25,608							4	25,608			
아 산 시	37	107,722	32	85,378	5	22,344							5	22,344			
서 산 시	25	64,209	19	27,853	6	36,356							6	36,356			
계 룡 시	4	8,305	4	8,305	-	-											
당 진 시	16	27,484	10	9,390	6	18,094							4	7,306	2	10,788	
부 여 군	16	70,685	13	48,034	3	22,651	3	22,651									
청 양 군	8	13,583	7	12,733	1	850									1	850	
예 산 군	14	15,461	14	15,461	-	-											
태 안 군	64	269,224	53	194,011	11	75,213					11	75,213					현장소장 유용(1건) 8,070 포함